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6 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정일영·정동영·박지혜

이재관 · 김남근 · 황정아

장종태·최민희·김 유

손명수 · 전진숙 · 조인철

백승아 · 문금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음.

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.

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,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9조제1항제3

호,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 제36조제1항제2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 제47조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|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|
| 임시조치) ① 판사는 아동학대 | 임시조치) ① |
| 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 | |
| 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 | |
|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
| 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| |
|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| |
| 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"임시 | |
| 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| |
| 1.・2. (생 략) 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 | 3 |
| 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| |
| 제2조제1호의 <u>전기통신을</u> 이 |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|
| 용한 접근 금지 | |
| 4. ~ 7. (생 략) | 4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⑨ (생 략) |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|
|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 |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 |
|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| |
|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
| 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|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 | |
| 분을 할 수 있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
- 2.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「전기 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 는 행위의 제한
- 3. ~ 8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- 제47조(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) ① 판사는 직 권 또는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 또는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청구에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「전기 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 는 행위의 제한
 - 4. ~ 9. (생략)
 - ② ~ ⑦ (생 략)

| 2 |
|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|
| |
| 3. ~ 8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|
| 제47조(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|
| 대한 보호명령) ① |
| |
| |
| |
| |
| |
| ,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3 |
| |
| |
|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|
| |
| 4. ~ 9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|